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불임과 같이 심의 의결을 요구함.

2. 주요골자

가. 조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정함(안 제3조 제1항)

다. 지소장의 직렬을 정함(안 제4조 제3항)

라. 소장 및 지소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제4항, 제5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사항
6.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사업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특위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⑤지소장은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장사무) ① (생략)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보건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등)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출생, 사망, 질환을 비롯한 보건에 대한 계몽, 선전등) 3. 영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및 개선등) 4.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산업시설에 관한 보건교육 및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관리등)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의 보건관리 환경위생지도와 보건시설의 향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학교보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안에 학교측과 공동관리 위원회의 설치등)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u> ----- ----- ----- ----- 제3조(관장사무) ①(현행과 같음) 1. ~ 15. (삭제)	지역보건법 시행 법령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사항(의료업에 관한 허가 및 등록, 개설신고등의 사무관리와 지도단속)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병리시험검사, 엑스선검사등) 8.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중의 지도에 관한 사항(보건소 관할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의의 업무 지도)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의료업에 대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등의 사무처리와 업무에 대한 지도단속)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임산부의 등록, 유아의 건강관리와 가족계획에 관한 선전지도등) 13.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마약지도에 관한 사항(마약법에 의한 면허, 지도감독 및 마약사범등의 단속) 15.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 15.	(신 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관리에 관한지도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① (생략) ② (생략) ③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 의료료를위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보건의로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시장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신설)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⑤지소장은 소장의 지휘·감독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거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1996. 3. 1] 조례 제42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 3 조(관장사무) ①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보건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 등)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출생, 사망, 질환을 비롯한 보건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 등)
3. 영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및 개선등)
4.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산업시설에 관한 보건교육 및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관리등)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의 보건관리, 환경위생지도와 보건시설의 향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학교보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안에 학교측과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등)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의료업에 관한 허가 및 등록, 개설신고등의 사무관리와 지도단속)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병리시험검사, 엑스선검사등)
8. 결핵, 성병, 나병 등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에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중의 지도에 관한 사항(보건소 관할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의의 업무지도)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의료약업에 대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등의 사무처리와 업무에 대한 지도단속)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임산부의 등록, 유아의 건강관리와 가족계

획에 관한 선전지도등)

13.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마약지도에 관한 사항(마약법에 의한 면허, 지도감독 및 마약사범등의 단속)

15.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②보건지소는 관할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사상의 계몽 및 교육

2. 보건통계의 자료수집

3. 예방접종

4. 결핵, 성병, 나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5.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6. 보건위생의 시험검사

7. 일반진료

8.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건소업무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소장 및 지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③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시장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5 조(공무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수수료의 징수) ①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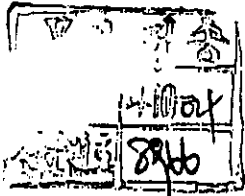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파주시 보건소	파주시 아동동 345	파주시 일원
" 문산읍지소	" 문산읍 문산리 59	문산읍 "
" 파주읍지소	" 파주읍 파주리 428-9	파주읍 "
" 법원읍지소	" 법원읍 법원리 376	법원읍 "
" 월롱면지소	" 월롱면 위전리 594-3	월롱면 "
" 탄현면지소	" 탄현면 축현리 877-1	탄현면 "
" 교하면지소	" 교하면 교하리 387-14	교하면 "
" 조리면지소	" 조리면 봉일천리 188-6	조리면 "
" 광탄면지소	" 광탄면 신산리 222-1	광탄면 "
" 파평면지소	" 파평면 금파리 284-5	파평면 "
" 적성면지소	" 적성면 마지리 48-1	적성면 "



경 기 도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전화 (0331) 249-4342 행4342 FAX 2429 남당 김 등 회

문서번호 보건 65550 - 2400

시행일자 1997. 6. 2. (3년)

경 유

발 음 수신처 참조

참 조 보건소장

선결	보건소장	지시	
접	일 자	결	
수	시 간	제	
	번 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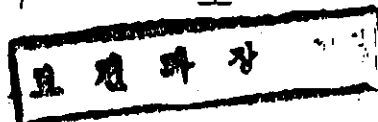
제 목 지역보건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1. 보건복지부 지의 65550-516('97. 5. 23) 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95. 12. 29)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96. 7. 13) 및 시행규칙('97. 2. 14)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직제규칙등으로 개정하지 않은채 개정전 보건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바,

3. 지역보건법의 조기장착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된 지역보건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등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 기 도 지



수신처 러

●地域保健法〔1995・12・29〕
法律第5101號全文改正

第1條 (目的) 이 법은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및 地域保健醫療事業의 連繫性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行政을 합리적으로 組織・운영하고, 保健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國民保健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國家는 地域保健醫療에 관한 調査・研究, 情報의 蒐集・정리 및 활용, 人力의 養成 및 資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고,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保健施策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市・道는 당해 市・道の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한 調査・研究, 人力確保, 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市・郡・區의 保健施策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市・郡・區는 당해 市・郡・區의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하여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人力確保, 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3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등)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地域住民,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 및 專門家の 의견을 들어 당해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郡・區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할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제출받은 市・道知事は 관할 市長・郡守・區廳長, 地域住民,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 및 專門家の 의견을 들어 市・道の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道議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保健醫療計劃(이하 “地域保健醫療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資料提供 및 協力を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機關・團體등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추 71)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第4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①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健醫療需要 測定
2.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 人力・組織・財政等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 地域保健醫療에 관련된 統計의 蒐集 및 정리

②第1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人力・技術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6條 (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 또는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第7條 (保健所の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8條 (保健醫療院) ①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保健醫療院을 設置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保健所の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서 행하여지

(추 71)

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國民健康増進・保健教育・口腔健康 및 營養改善事業
 2. 傳染病의 豫防・관리 및 診療
 3.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
 4. 老人保健事業
 5. 公衆衛生 및 食品衛生
 6. 醫療人 및 醫療機關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7.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8. 應急醫療에 관한 사항
 9. 農漁村등保健醫療를 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保健診療員 및 保健診療所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10. 藥事에 관한 사항과 麻藥・向精神性醫藥品の 관리에 관한 사항
 11. 精神保健에 관한 사항
 12. 家庭・社會福祉施設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保健醫療事業
 13.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
 14.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에 관한 사항
 15. 障礙人의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
 16.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増進 및 이를 위한 研究등에 관한 사업
- 第10條 (保健支所の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の 支所(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 第11條 (保健所の 組織) 保健所の 組織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地方自治法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다.
- 第12條 (專門人力의 適正配置등) ①保健所에는 所長과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免許・資格 또는 專門知識을 가진 人力(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市・道知事は 保健所の 專門人力등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所간에 專門人力등의 交流를 할 수 있다.

(추 71)

●**지역보건법시행령** [1996. 7. 13]
대통령령제15119호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 75)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보건소의 조직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제·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총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2조 (보건지소장) ①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 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참 75)